

#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노인 이·미용비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에 주민등록된 7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에게 이·미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품위 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를 시행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내용에 '노인 이·미용비'를 신설함(안 제4조)
- 나. 종전의 '지원한다'를 '지원 할 수 있다'로 변경함(안 제5조)
- 나. 노인 이·미용비 지원 조항을 신설함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노인복지법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4.7.15. ~2024.8.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평창군 공고 제2024-1008호, 가족복지과-2319(2024. 7. 15.)호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892(2024. 7. 12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기획예산과-892(2024. 7. 12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2124(2024. 7. 12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2304(2024. 8. 6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2797(2024. 8. 14.)호]

##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8. 노인 이·미용비

제5조 본문 중 “**지급한다**”를 “**지급할 수 있다**”로 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노인 이·미용비 지원) 군수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원씩 이·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시설입소자 및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원내용)    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8. (생략)</p> <p>제5조(장수수당의 지급)   군수는 장수수당 수급권자에게는 월2만원의 장수수당을 <u>지급한다</u>. 다만, 수급권자의 사망, 관외 전출, 수령거부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지급을 중지한다.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6조 · 제7조 (생략)</p>	<p>제4조(지원내용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노인 이 · 미용비</u></p> <p><u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u></p> <p>제5조(장수수당의 지급) ----- ----- <u>지급할 수</u> <u>있다.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6조(노인 이 · 미용비 지원) 군수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원씩 이 · 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시설입소자 및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제7조 · 제8조 (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)</u></p>

# 관계법령 발췌

## 노인복지법

[시행] 2024. 8. 7.

**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: '평창군 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사업'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
- 관련조문 : 「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안)」 제6조

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'평창군 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사업'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원씩 이·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로 시행하며,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원비와 제반 비용(홍보비, 카드 수수료 등)이 소요됨

### 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
총 소요액	193,800	751,440	799,920	896,880	969,600	
대상자(명)	5,700	6,200	6,600	7,400	8,000	
세출	지원비	171,000	744,000	792,000	888,000	960,000
	제반비용(홍보비, 카드수수료 등)	22,800	7,440	7,920	8,880	9,600

### 다. 재원조달 방안 : 자체재원(군비)

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박서우
연락처	(033) 330 - 2124

**< 연도별 비용추계표 >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<b>세 출</b>		193,800	751,440	799,920	896,880	969,600	3,611,640
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		193,800	751,440	799,920	896,880	969,600	3,611,640
<b>재원 조달</b>		193,800	751,440	799,920	896,880	969,600	3,611,64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93,800	751,440	799,920	896,880	969,600	3,611,640
	지방세(군비)	193,800	751,440	799,920	896,880	969,600	3,611,64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